

유사행정규제 정비대상 사규현황 (항자부 확정과제)

연번	지방공기업명	내부규정명	관련조문	조문 내용	불합리유형 (항자부검토)	불합리사유 (항자부 검토)	개정(안)	부서	담당자	연락처	비고
1	서울도시철도공사	소송사무처리규정	제43조(해석의 협의결정)	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하였거나 해석상의 의문이 있는 사항은 공사와 소송대리인이 협의하여 결정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사의 해석에 의한다.	불공정계약	7. 지방공기업에 유리한 계약 해석		법무처	김문규	02-6311-2036	
2	서울도시철도공사	물품보관전달함 이용약관	제7조(이용의 거절)	③ 그외 공사에서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	주민생활불편	1. 모호한 이용 제한 규정에 따른 자의적 운영 소지		전략개발처	임자영	02-6311-2249	
3	서울도시철도공사	재산관리규정	제26조(임대조건)	5. 그 밖에 수의계약으로 처리하는 것이 공사에 특별히 유리하다고 사장이 인정할 때	기타	2. 자의적 운영 소지 있는 규정		국내사업처	박형훈	02-6311-2256	
4	서울도시철도공사	재산관리규정	제28조(매각조건)	6. 그 밖에 수의계약으로 처리하는 것이 공사에 유리하다고 사장이 인정할 때	기타	2. 자의적 운영 소지 있는 규정		국내사업처	박형훈	02-6311-2256	
5	서울도시철도공사	주차장관리운영내규	제15조(주차거부)	4. 그 밖에 주차장의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차량이 주차하고자 할 때	주민생활불편	1. 모호한 이용 제한 규정에 따른 자의적 운영 소지		총무지원처	강형욱	02-6311-2145	

